

의상학과 전공 내규

시행일 : 2021년 9월 1일

1. 학과교수회의 운영

가. 회의운영

- 회의는 매학기 학과교수의 업무 일정을 고려하여 필요시 회의를 시행함.
- 회의는 시급한 사안을 포함하여 학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함.

나. 회의 및 의결 성립 요건

- 회의 성립 요건 : 학과 교수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 / 휴직 및 연구년 교원 제외
- 의결 요건 : 출석교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성립
- ※ 전자결재, 이메일 등으로 근거가 명확한 합리적 방법에 의해 의사표현을 한 경우 회의 성립 요건과 의결 요건에 포함됨.

다. 의결사항

- 학과 교육과정 및 내규의 제정 및 개정
- 학과 발전계획에 대한 사항
- 학과의 실습실 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
- 기타 학사운영, 학생지도 및 상담, 장학생 선발, 학생의 권익 등 학과장이 판단하여 회의에 의하여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
2. 학생 지도

가. (학생) 지도 교수

- 학생 지도 및 상담은 담당 지도 교수가 실시하며, 학과 교수는 지도 교수의 역할을 수행함.
- 학과장은 학과 교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도 교수에 학생을 배정함.

나. 면담 실시 및 자료 기록

- 학생상담에 대한 사항은 대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담 내용을 기록하며, 학생이 면담을 신청하거나 지도 교수가 면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면담을 할 수 있음.

다. 기타사항

-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배려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과교수회의에 상정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함.

3. 전과 전출(생활과학대학 재학생 대상)

가. 전과 허용 인원 및 조건

구분	허용 인원	전과 기준 요건
2학년 1학기 / 2학기 이수	전체T/O×50%	<디자인 관련 선수강 과목> 및 <의복구성 관련 선수강 과목> 중 각각 1과목 이상, 총 2과목 이상 이수 완료하거나 수강 중인 자
2학년 2학기 / 3학기 이수	잔여T/O(=전체 T/O-전출자)×50%	<디자인 관련 선수강 과목> 및 <의복구성 관련 선수강 과목> 중 각각 1과목 이상, 총 3과목 이상 이수 완료하거나 수강 중인 자
3학년 1학기 / 4학기 이수	잔여T/O(=전체 T/O-전출자)	<디자인 관련> 2과목 이상, <의복구성 관련> 3과목 이상, 총 5과목 이상 이수 완료하거나 수강 중인 자

※ 참고사항

1. 허용 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절사함.
2. 전체 T/O 산정방법 : 해당 학년이 입학한 연도의 학과 입학정원의 15% 이내(소수점 절사)
/ 실제 적용방법 : [대학 규정(20%), 학과 내규(15%)] 기준을 고려하여 최소 인원을 선택함

○ 전과 허용 인원 산정 예시 : 2013학번. **학과. 입학정원 40명 기준

[1단계] : 전체T/O 산정

① 입학정원 40명 × Min[대학규정 20%, 학과 내규 15%] = 6명(소수점 이하 절사)

[2단계] : 연도별 전출자 인원 산정

시기	대상자	전출 허용 인원(소수점 이하 절사)	합격에 의한 전출자	비고
2013학년도 2학기 말	2학기 이수자	3명 [=6명×50%]	2명	
2014학년도 1학기 말	3학기 이수자	2명 [=6명-2명]×50%	1명	
2014학년도 2학기 말	4학기 이수자	3명 [=6명-3명]		

나. 전과 전출자 승인(선발) 방법

- 전과 허용 인원 범위 내 전과기준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[1단계 : 전공 탐색 노력(전공과목 수강수)과 상담 내역 등], [2단계 : 성적]을 고려하여 학과장이 전과 전출자를 승인(선발)함.
 - 1단계 : 지원자 중 전공 탐색 노력(수강한 전공과목수) / 학과 교수 상담 내역 등 반영
 - 2단계 : 동점자의 경우 성적 우수자
- 2회 이상 의상학과 전출 승인이 되었던 학생이, 전과하고자 하는 학과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재차 전출 신청한 경우는, 전출자 선발과정에서 “취득학점 량에 의한 우선순위 혜택”을 받을 수 없다.

다. 기타사항

- 전과 전출 지원 자격 등의 기준은 학교 규정에 의한 기준과 학과 내규에 의한 규정을 모두 충족해야 전출이 가능함.
- 전과 전출을 원하는 학생은 학과 내규 외 학교 규정에 의한 전과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.
- 전과 전출에 대한 업무 처리는 학교 규정과 학과 내규에 의한 기준을 준용함.
- 예시 : 대학 규정에 의한 지원 자격 기준(2014-1학기 전과 기준)

구분	지원 자격	비고
2학년 1학기 / 2학기 이수	졸업학점의 1/4학점 이상 취득자	
2학년 2학기 / 3학기 이수	졸업학점의 3/8학점 이상 취득자	
3학년 1학기 / 4학기 이수	졸업학점의 1/2학점 이상 취득자	

4. 전과 전입

가. 대상자 :

- 전과 전입을 원하는 소속 학과의 전출 승인, 전형료 납부 등 요건을 충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함.

나. 전과 전입 선발 기준

- [기존 소속 학과의 성적] 및 [면접점수] 등을 반영하여 선발하며, 합격점수 기준 등 세부 사항은 학사지원팀의 지침에 따른다.

부칙

본 내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내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내규는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내규는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내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내규는 2021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내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